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2805
----------	-------------

제안연월일 : 2021년 12월 16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마을자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마을자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자원"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마을"이란 (생략)</p> <p>2. "마을공동체"란 (생략)</p> <p>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마을"이란 (생략)</p> <p>2. "마을공동체"란 (생략)</p> <p>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마을"이란 (생략)</p> <p>2. "마을공동체"란 (생략)</p> <p>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생략)</p> <p>4. <u>"마을자원"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말한다.</u></p>
<p>제14조(평가·포상)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② ~ ④ (생략)</p>	<p>제14조(평가·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주민참여도 등 마을자원</u> <u>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u></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p>제14조(평가·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마을자원"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주민참여도 등 마을자원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신 · 구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마을"이란 (생략)</p> <p>2. "마을공동체"란 (생략)</p> <p>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마을"이란 (생략)</p> <p>2. "마을공동체"란 (생략)</p> <p>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생략)</p> <p>4. <u>"마을자원"이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 등을 말한다.</u></p>
<p>제14조(평가·포상) ①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4조(평가·포상)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주민참여도 등 마을자원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u></p>
<p><u>② ~ ④</u> (생략)</p>	<p><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p>